

충청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3년 11월 17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 행정 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함.

4. 주요골자

-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로 통합
-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 변경

(2년 거치 1년 상환 → 3년 거치 2년 상환)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특별회계 운용방향에 있어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등은 통폐합하는등 '94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 하므로써 행정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 일반회계로 통.폐합함에 있어 조항중 존치가 불필요한 일부조항의 삭제와 각조문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특히 제9조 제4항중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의 상환기한을 2년거티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충청북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